

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함 (안 제2조)

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· 과 · 소		기 획 실 ☎ 940-4071
입 안 자	기 획 실 장	이 춘 기
	감 사 담 당	백 철 현
	담 당 자	장 문 규